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3
----------	-----

제출연월일 : 2003. 8.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전제3·4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의 하자보수기간(5년)이 만료되어 시기적으로 시설재투자 비용의 적립이 요구되며, 타시·도 지방(국가) 산업단지에 비하여 면적비율이 70퍼센트로 높게 책정되어 입주업체간 부담률이 심하게 나타나 그 격차를 해소하는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폐수종말처리장의 위수탁 운영 관계의 임의적 제한요소 개정 및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 조항을 삽입함(안 제2조제1항제6호).
- 나.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의 구체화 및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함(안 제19조).
- 다. 공단외 지역 생활하수 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합리적 비용부담금 부과 기준과 비용부담금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함(안 제4조제3항).
- 라.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내용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2조, 제24조의2, 제25조의2, 제3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환경 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 나. 합 의 : 해당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03. 7. 11. ~ 7. 30. (20일간) / 의견없음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14조”로 한다.

제2조제2호중 “지방공기업과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폐수종말처리장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로 하고, 동조제6호중 “시설설치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를 “시설설치비,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초과부담금”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탁자는 처리장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배출기준에 의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사용) ①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기본부과금 선납부
3. 기타 처리장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 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

②제22조에 의한 유지관리비 징수활동을 다하였으나, 당월 부도발생으로 회수 불능인 비용부담금은 재투자 적립금 이자 발생분으로 충당하되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의 제목 “(유지관리비의 부담)”을 “(유지관리비와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 부담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의 부담) ①기본부과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장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운영책임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수·침출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은 관리기관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환경청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의2(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의 부과방법) ①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의 부과방법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수탁자는 징수유예 요청 등으로 기본부과금을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기간은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비등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그 비용을 가감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중 “적립금 또는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적립금, 유지관리비,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중 “1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2중 산출공식 “ $E = F \times R(0.7KI/KT + 0.3LI/LT)$ ” 을 “ $E = F \times R \times 0.3LI/LT$ ”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u> 규정에 의거 대전 제3·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생략)</p> <p>2.수탁자라 함은 <u>지방공기업과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u>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p> <p>3.~5. (생략)</p> <p>6. “부담금”이라 함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장 <u>시설설치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u>를 말한다.</p> <p>7.(생략)</p> <p>제4조(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p> <p>①~②(생략)</p> <p><신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u> 규정에 의거 대전 제3·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생략)</p> <p>2.-----<u>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u>” -----</p> <p>-----</p> <p>-----</p> <p>-----</p> <p>-----</p> <p>3.~5. (생략)</p> <p>6.-----<u>시설설치비,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초과 부담금</u>을 말한다.</p> <p>7.(생략)</p> <p>제4조(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p> <p>①~②(생략)</p> <p>③수탁자는 <u>처리장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등을 유입</u> 처리할 수 있다.</p>

현행	개정
<p>제12조(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u>다음 각호와 같다</u></p>	<p>제12조(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u>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배출기준에 의한다.</u></p>
<p><u>1.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u> <u>2.COD(화학적 산소요구량)</u> <u>3.SS(부유물질량)</u></p>	
<p>제19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사용) <u>시설재투자적립금은 처리장 시설의 보완, 개선, 장비의 교체, 고정자산의 구입, 신장비 또는 신기기의 구입등 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u></p>	<p>제19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사용) ①시설재투자적립금은 <u>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기본부과금 선납부 3.기타 처리장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 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 <p>②제22조에 의한 유지관리비 징수활동을 다 하였으나, 당월 부도발생으로 회수 불능인 비용 부담금은 재투자 적립금 이자 발생분으로 <u>충당하되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u></p>
<p>제5장 <u>유지관리비의 부담</u></p>	<p>제5장 <u>유지관리비와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 부담금의 부담</u></p>
<p><u><신설></u></p>	<p>제24조의2(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의 부담) ①기본부과금은 <u>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처리장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운영책임자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u>폐수·침출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u>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은 관리기관이 원인을 분석한 후 <u>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환경청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
<p><신설></p> <p>제34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시설설치비, 시설채투자 적립금 또는 유지관리비 부담금이 체납된 사업자가 사업장을 양도, 상속, 합병등의 사유로 타인에게 승계하였을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에 따른 권리와 체납금에 대한 납부 의무를 진다.</p> <p>②.(생략)</p>	<p>제25조의2(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의 부과방법) ①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의 부과방법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수탁자는 징수유예 요청 등으로 기본부과금을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채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 기간은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④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비등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그 비용을 가감하여 징수 할 수 있다.</p> <p>제34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 -----적립금, 유지관리비,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p> <p>-----</p> <p>-----</p> <p>-----.</p> <p>②. (생략)</p>

현	행	개	정
[별지 제1호서식]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 (서식내용 생략)	19 년 월 일	[별지 제1호서식]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 (서식내용 현행과 같음)	__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서식내용 생략)	19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서식내용 현행과 같음)	__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신청서 (서식내용 생략)	19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신청서 (서식내용 현행과 같음)	__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 (서식내용 생략)	19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 (서식내용 현행과 같음)	__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승인서 (서식내용 생략)	19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승인서 (서식내용 현행과 같음)	__년 월 일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 (서식내용 생략)	19 년 월 일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 (서식내용 현행과 같음)	__년 월 일

현	행	개	정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사용개시신고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서식내용 생략)</div> <div style="text-align: right;">19 년 월 일</div>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사용개시신고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서식내용 현행과 같음)</div> <div style="text-align: right;">__년 월 일</div>							
[별지 제7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제 호</td> <td style="width: 33%;">19 년도 (분기)</td> <td style="width: 33%;">회 계</td> </tr>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서식 내용 생략</div>		제 호	19 년도 (분기)	회 계	[별지 제7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제 호</td> <td style="width: 33%;">_ 년도 (분기)</td> <td style="width: 33%;">회 계</td> </tr>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서식 내용 현행과 같음</div>		제 호	_ 년도 (분기)	회 계
제 호	19 년도 (분기)	회 계							
제 호	_ 년도 (분기)	회 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제 호</td> <td style="width: 33%;">19 년도 (월)</td> <td style="width: 33%;">회 계</td> </tr>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서식 내용 생략</div>		제 호	19 년도 (월)	회 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제 호</td> <td style="width: 33%;">_ 년도 (월)</td> <td style="width: 33%;">회 계</td> </tr>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서식 내용 현행과 같음</div>		제 호	_ 년도 (월)	회 계
제 호	19 년도 (월)	회 계							
제 호	_ 년도 (월)	회 계							
[별지 제7-1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별지 제7-2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제 호</td> <td style="width: 33%;">19 년도 (월)</td> <td style="width: 33%;">회 계</td> </tr>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서식 내용 생략</div>		제 호	19 년도 (월)	회 계	[별지 제7-1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별지 제7-2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제 호</td> <td style="width: 33%;">_ 년도 (월)</td> <td style="width: 33%;">회 계</td> </tr>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서식 내용 현행과 같음</div>		제 호	_ 년도 (월)	회 계
제 호	19 년도 (월)	회 계							
제 호	_ 년도 (월)	회 계							
[별지 제8호서식] 징수유예(분할징수) 신청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서식내용 생략</div> <div style="text-align: right;">19 년 월 일</div>		[별지 제8호서식] 징수유예(분할징수) 신청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서식내용 현행과 같음</div> <div style="text-align: right;">__년 월 일</div>							
[별지 제9호서식] 독 축 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서식내용 생략)</div> <div style="text-align: right;">19 년 월 일</div>		[별지 제9호서식] 독 축 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서식내용 현행과 같음)</div> <div style="text-align: right;">__년 월 일</div>							
[별표 2] 시설재투자적립금 1. 산출공식 : $E = F \times R(0.7KI/KT + 0.3LI/LT)$ E :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F :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 비용 R : 물가상승율 KT : 시설준공시 전체업소 전체면적(m ²) KI : 시설준공시 개별업소 부지면적(m ²)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유지관리비산출기준 적용)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부하량(유지관리비산출기준 적용)		[별표 2] 시설재투자적립금 1. 산출공식 : $E = F \times R \times LI/LT$ E :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F :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 비용 R : 물가상승율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유지관리비산출기준 적용)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부하량(유지관리비산출기준 적용)							

관계법령

< 수질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환경부, 시행일 2002.7.1]

제19조 (배출부과금) ①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사설 운영기구의 대표자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종류·산정방법 및 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 4의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 여부
5. 기타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부과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이내에 한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5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따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8.28, 2000.1.21>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6.30 대통령령 제17288호 환경부]

제13조 (배출부과금의 종류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하"부과금"이라 한다)은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과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말한다. 이하"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하며, 배출허용기준이하로서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6호 환경부]

제12조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시행자"라 한다)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 또는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이하 "방지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시행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에서 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이하 "방지사업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방지사업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정도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방지사업의 종류)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방지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공장 또는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녹지의 형성, 중앙열공급시설 및 공공용 녹지의 설치와 그 관이사업
3.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된 농경지·어장·산림 또는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객토·삭토·복토·준설사업, 토양개량제시용 사업, 산림 또는 농업용 시설개축사업
4. 특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배수설비등 시설의 설치사업
5.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
6. 기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1.1.29>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및 동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준하는 방지사업 실시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0조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행자는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환경관리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은 징수된 금액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8.17 대통령령 제16954호 환경부]

제21조 (원인자별 비용부담액 결정기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원인자가부담하여야 할 방지사업비용부담금액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업활동이당해 방지사업과 관계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그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방지사업 부담금의 총액을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1.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오염물질처리비용
4. 사업의 종류
5. 자본금·종업원수·연간제품생산량 및 매출액등을 감안한 사업규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정 1999.12.31 법률 제6095호 환경부]

제33조 (협의기준초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이 확정되고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하 "협의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②협의기준은 사업자가 평가서에 이를 제시하는 경우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내용에 이를 포함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2.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3.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의기준 초과인 정도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5. 오염물질의 배출지역
6. 협의기준의 초과 횟수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⑥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초과부담금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초과부담금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발생된 환경영향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⑩초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심 사 보 고 서

2003년 8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

I.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3년 8월 18일
3. 상 정 일 자 : 제12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 8. 27)상정, 심사,
수정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전제3·4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의 하자보수기간(5년)이 만료되어 시기적으로 시설재투자 비용의 적립이 요구되며, 타시·도 지방(국가) 산업단지에 비하여 면적비율이 70퍼센트로 높게 책정되어 입주업체간 부담률이 심하게 나타나 그 격차를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가. 폐수종말처리장의 위수탁 운영 관계의 임의적 제한요소 개정 및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 조항을 삽입함(안 제2조 제2호 제6호)
- 나.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의 구체화 및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함(안 제19조)
- 다. 공단외 지역 생활하수 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합리적 비용부담금 부과 기준과 비용부담금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함(안 제4조제3항)
- 라.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내용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2조, 제24조의2, 제25조의2, 제34조)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 충 일)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앞의 내용과 같음.

2.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대전제3·4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부담금의 종류·산정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하려는 사항으로
- 시설재투자적립금에 있어서 70%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시설의 부지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타 시·도의 지방 및 국가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배출오염부하량을 기준으로 하는 한편,
- 산업단지의 생활하수의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비용부담금의 기준과 비용부담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동 조례안 검토결과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이 지난 1992년부터 199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준공되었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은 지난 1992년 7월부터 시행되어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하자보수기간을 사유로 그동안 연차적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VII. 수 정 내 역 : 수정안과같음

VIII.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없 음

의안 번호	153
----------	-----

제출연월일 : 2003. 8.

제 출 자 : 산업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개정조례안 용어의 정의중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을 법령에서 정한대로 수정하고, 별표2의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산출공식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공식상 오류 수정과 월간처리장 소요 예상비용산정 물가상승율 적용 부분을 삭제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중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을 법령에서 정한 대로 수정함(안 제2조제6호).

나. 시설재투자적립금적용방법중 산출공식의 배율(0.3)과 KI, KT를 삭제하고 월간처리장소요예상비용의 물가상승율 적용 부분을 삭제함(안 별표2).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6호중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 및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협의기준부담금”이라 한다)”로 한다.

안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시설재투자 적립금

1. 산출공식

$$E = F \times R \times LI/LT$$

E :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F :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비용

R : 물가상승율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유지관리비산출기준 적용)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부하량(유지관리비산출기준 적용)

2. 적용방법

-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비용

$$F = \text{총공사금액} \times 2/1000$$

- 총공사금액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 처리장 준공이후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생략)</p> <p>2.수탁자라 함은 지방공기업과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자중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 받은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p> <p>3.~5. (생략)</p> <p>6. “부담금”이라 함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장 시설설치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를 말한다.</p> <p>7.(생략)</p> <p>[별표 2] 시설재투자적립금</p> <p>1. 산출공식</p> $E=F \times R \times (0.7KIKT+0.3 LI/LT)$ <p>E :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F : 월간 처리장 소요예산 비용 R : 물가상승율 KT : 시설준공시 전체업소 부지면적(m²) KI : 시설준공시 개별업소 부지면적(m²)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LI : 개별업소 배출부하량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p> <p>2. 적용방법</p> <p>• 월간 처리장 소요예산비용(F)</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5%;">공사금액 (백만원)</th> <th style="width: 7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td> <td></td> <td>-총공사금액×2/1000×물가상승율÷12 (물가상승율=부과전년도물가지수/준공년도 물가지수) -물가지수 :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 중 총지수</td> </tr> </tbody> </table> <p>- 처리장 준공이후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p>	구 분	공사금액 (백만원)	비 고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총공사금액×2/1000×물가상승율÷12 (물가상승율=부과전년도물가지수/준공년도 물가지수) -물가지수 :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 중 총지수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현행과 같음)</p> <p>2.-----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p> <p>3.~5. (현행과 같음)</p> <p>6.-----</p> <p>-----시설설치비,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말한다.</p> <p>7.(현행과 같음)</p> <p>[별표 2] 시설재투자적립금</p> <p>1. 산출공식</p> $E=F \times R \times 0.3 LI/LT$ <p>E :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F : 월간 처리장 소요예산 비용 R : 물가상승율 KT : 시설준공시 전체업소 부지면적(m²) KI : 시설준공시 개별업소 부지면적(m²)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LI : 개별업소 배출부하량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p> <p>2.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현행과 같음)</p> <p>2.(개정안과 같음)</p> <p>3~5. (현행과 같음)</p> <p>6.-----</p> <p>-----시설설치비,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 및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협의기준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p> <p>7.(현행과 같음)</p> <p>[별표 2] 시설재투자적립금</p> <p>1. 산출공식</p> $E=F \times R \times LI/LT$ <p>E :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F : 월간 처리장 소요예산 비용 R : 물가상승율 (삭제) (삭제)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LI : 개별업소 배출부하량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p> <p>2. 적용방법</p> <p>• 월간 처리장 소요예산비용</p> $F = \text{총공사금액} \times 2/1000$ <p>- 총공사금액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 처리장 준공이후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p>
구 분	공사금액 (백만원)	비 고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총공사금액×2/1000×물가상승율÷12 (물가상승율=부과전년도물가지수/준공년도 물가지수) -물가지수 :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 중 총지수						